



2019년 7월 11일

제3권 7월호

사랑채요양원

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

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시설급여는

장기요양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 (시설급여) 대상자는 상담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.

.일반 수급자 : 입소상담, 입소계약, 서비스 제공

.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:

관할 시, 군, 구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 후 요양원 상담

.구비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급여내용통보서), 입소자 신분증, 병명진단서 및 복용중인 약 처방전

공 지 사 항

[김포 사랑채 외출·외박 안내]

외출·외박을 원하시는 보호자께서는 **3일전**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.

[장기요양인정등급 갱신 시 제출 서류 안내]

갱신을 하신 경우에는 새로 발급 받으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.

www.gimposarangchae.co.kr

찾아 오시는 길



대중교통 안내

※ 서울, 강화, 인천에서 오시는 분
: - 사우고등학교에서 하차 후 육교 건너 사우 삼거리 쪽으로 도보로 10분 거리

※ 영등포방면에서 40~50분거리

※ 일산 김포공항방면에서 20분거리

※ 부평방면에서 30분거리



▶ 발행처 사랑채요양원 주·야간보호센터

▶ 편 집 박 미 혜

▶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조리미로 39, 2층

▶ 연락처 031) 981-1200, 981-1217 / FAX : 031) 989-668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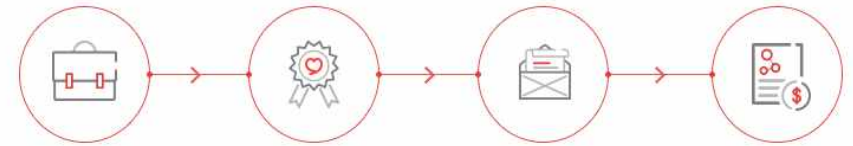
7월 사랑채 사회복지 프로그램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오전	1	2	3	4	5	6
오후						
오전	8	9	10	11	12	13
오후						
오전	15	16	17	18	19	20
오후						
오전	22	23	24	25	26	27
오후						
오전	29	30	31			
오후						

*외부강사 치매(인지)프로그램은 외부강사 사정에 의해 시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

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

0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

국민건강보험공단

04 장기요양급여이월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장기요양기관

장기요양인정 신청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

-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-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* 노인성질환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. (장애인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☎ 1365)

* 단,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산출(15.9.1 시행)

미술치료, 지역연계 등 인지기능 회복 유지 및 증진 프로그램



-후 원 물 품-

- 이○○ 어르신 - 토마토 1팩, 딸기 2팩, 참외 2봉지, 오렌지 1봉지
- 이○○ 어르신 - 사과즙 1박스
- 이○○ 어르신 - 드링크제 1박스, 굴 1박스, 토마토 1박스
- 이○○ 어르신 - 드링크제 1박스

『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』

